

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 - OOO)

피 고 △△세무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

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〇〇. 〇. 〇.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〇〇년 수시 분 부가가치세 10.234.5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피고로부터 20○○. ○. ○.자로 소외 ☆☆ 주식회사의 과점 주주임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니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10,234,560원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.
- 2. 그러나 피고는 소외 ☆☆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그 본점 소재지로 발송 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 이○○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한 사실이 있습니다.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

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가 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물을 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송달을 하였다할 것입니다.

3. 따라서, 피고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 한 송달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보충적인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납세의무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소장부본

1부

1. 납 부 서

1부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○ ○ 행정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